



보도시점 2025. 5.12.(월) 조간 배포 2025. 5. 9.(금) 16:00

##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‘25.5.12.~6.23.) 실시

- ▶ 여신전문금융회사(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)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

금융위원회(위원장 김병환)는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‘통신사기피해환급법’) 시행령」 개정안을 5.12일(월) 입법예고하였다. 이는 지난 3.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「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」의 후속조치로, 여신전문금융회사(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)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.

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·적금 등 금융 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,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\*를 하도록 하고 있다. 다만,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,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.

\* ①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, ②대면 확인, ③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

그러나,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, 캐피탈·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,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\*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,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여전법에 따라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

입법예고 기간은 6.23일까지이며,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'25년 3분기 내 개정(공포 후 6개월 후 시행)할 예정이다.

#### <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>

- 예고기간 : 2025. 5. 12일(월) ~ 2025. 6. 23일(월), (40일)
-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    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
    - 전자우편 : ryuej@korea.kr      - 팩스 : 02-2100-2946

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- 정책마당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장	서나윤	(02-2100-2620)
		담당자	사무관	유은지	(02-2100-2524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국장	정재승	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장	김태근	(02-3145-5685)